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947

발의연월일: 2025. 4. 18.

발 의 자:이재관·강선우·김남근

전재수 • 허성무 • 김기표

송재봉 · 김성환 · 문진석

김교흥 · 김동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및 「퇴직연금감독규정」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현 행법에 따른 적립금은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.

그런데 국민연금, 사학연금, 공무원연금 등은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, 최근 10년간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등이 출 자한 벤처펀드는 9.2%~17.2%의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운용수익률 제고 및 벤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0조 및 제30조의2).

법률 제 호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0조의2(적립금의 운용)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및 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.
 - 1. 운용방법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
 - 가.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· 적금
 - 나.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 약 중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 험계약
 - 다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증권 (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. 이 경우 증권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)은 사용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.

- 라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
- 마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중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
- 바.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 반시설채권
- 사.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인 중장기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 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
- 2. 기준: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
 - 가. 제1호 각 목에 따른 운용방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 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 에서 운용할 것.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세부적인 투자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 - 나.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은 「자본시장과

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의 방법 으로만 투자할 것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0조(운용관리업무의 수행) ①	제30조(운용관리업무의 수행) ①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	②		
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			
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			
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5.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	<삭 제>		
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			
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			
및 기준 등에 따를 것			
<u><신 설></u>	제30조의2(적립금의 운용) 퇴직연		
	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운용		
	방법 및 기준에 따라 적립금을		
	<u> 운용하여야 한다.</u>		
	1. 운용방법: 다음 각 목의 어		
	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		
	<u>가.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</u>		
	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		
	<u>는 예금·적금</u>		
	나.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6호		
	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		
	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		

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

다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증권(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 중 비상장주식을 포함한다. 이 경우 증권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)은 사용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아니어야한다.

라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 한 법률」에 따라 체신관 서가 취급하는 예금

마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중 신용등급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

는 예탁금

바.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
률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
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
중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
민간투자법」 제30조에 따
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
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
는 사회기반시설채권

사.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 인 중장기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운용방법

2. 기준: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

가. 제1호 각 목에 따른 운용 방법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 회가 고시하는 운용방법을 제외한 운용방법에 대해서 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운

용할 것. 이 경우 금융위 원회는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제도별로 세부적 인 투자한도를 달리 정하 여 고시할 수 있다.

나.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자산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의 방법으로만 투자할 것